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97. 7. 10.
시민보건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6. 20.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97. 6. 25.

다. 상정일자 : 제46회 임시회 제4차위원회('97. 7. 1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원배 보건행정과장)

가. 제 안 이 유

지역보건법시행령(1996. 7. 13 대통령령 제15119호)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 요 골 자

○ 위원회의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심의사항등을 정함. (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정함. (안 제3조)

○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역보건법('95. 12. 29 법률 제5101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 동 위원회에서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동 조례안은 입법체계상 제명을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으로 하고, 제1조중 "구청장"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및 답 변 요 지

○ 질의요지(김유헌 위원)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없었는가?

○ 답변요지(김원배 보건행정과장) :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작년에 지역보건법이 제정되었으며, 지역보건법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음.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중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건소장이 위원장을 할 수는 없는가?

○ 답변요지(김영호 보건소장) : 타구조례와 맞추다 보니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했지만 저의 생각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5. 토 론 요 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 정 안 요 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유동균 위원 외 1인

나. 수정이유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코자 함.

다. 수정 주요 골자

- "설치조례(안)"을 "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으로 함. (안 제명)

- "구청장"을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으로 함. (안 제1조)

7.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

8. 소 수 의 견 의 요 지 : 없 음

9. 기 타 사 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 안 번 호	190

제안년월일 : 1997. 7. 10.

제 안 자 : 시민보건위원장

1. 수 정 이 유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코자 함.

2. 수 정 주 요 골 자

- "설치조례(안)"을 "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으로 함. (안 제명)
- "구청장"을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으로 함. (안 제1조)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중 "설치조례(안)"을 "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원안 ·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의 안 번 호	190

제출일자 : 1997. 6.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지역보건법시행령(1996.7.13 대통령령제15119호)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심의사항 등을 정함. (안 제2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정함. (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제9조)

3. 제정근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수반여부 : 별도조치 필요

첨부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제2조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제 4 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제 8 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9 조 (공청회등 개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11 조 (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2 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